

서울대학교 특허심의제도 운영 안내

<산학협력단, 2023. 04. 05.>

1. 특허심의제도 개요

□ 목적

- (우수특허 발굴) 기술·시장 동향과 국가 사회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전략 특허를 발굴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및 우수특허의 상용화 유도
- (기술사업화 효율화·고도화) 기존의 연구자 주도 특허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평가를 통해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신청방법 및 심의등급별 지원사항

구분	신청방법 및 심의등급별 지원사항
신청 방법 및 기준	1.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전담 출원기관에서 출원 진행) 2. 국내출원 이후 특허심의 신청 가능 (비전담사무소 출원 건은 해외출원 마감 기한이 최소 4개월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사무소로 이관 후 진행)
비용 지원	1. 국내출원: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 사용 2. 해외출원: 심의등급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S: 국내+PCT+해외 2개국 지원 A: 국내+PCT+해외 1개국 지원 B: 지원 없음

□ 주요 기능

- 특허 등급 평가
- 특허 출원 범위 설정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재심의
- 특허 출원 관련 정책 제안 및 컨설팅

2.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3분과(전기·전자·통신·프로그램 / 바이오 / 화학·재료·기계)로 구성
- 위원장은 지식재산전략실장으로 하며 각 분과는 분과장 1인, 담당 전문위원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위원 2인으로 지명하여 총 5인으로 구성

※ 구성위원은 위원 POOL에서 개별 요청하여 평가에 참여하므로 매회 변경될 수 있음

□ 위원회 개최일

- 격월로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 심의 대상

- 본교가 기술사업화 주도 가능한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신청한 심의 건

■ 특허심을 신청한 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선정한 기술 분야별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국내 출원 진행

■ 비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국내 출원을 진행한 경우, 전담사무소로 이관 후 특허심의 신청 가능

■ 특허심의 결과 S, A등급 건의 국내출원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단, B등급 건의 경우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 간접비 계정에서 차감)

■ 심의 제외 대상

- 1) (심의 미신청)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출원 건
- 2) (출원 유형) 예비출원(특허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가출원), 전자출원
- 3) (긴급 출원) 1개월 내 출원, 논문 공개 일자 도래 건 등
- 4) (영리기관 공동소유) 영리기관 공동출원 건
- 5) (비영리기관 공동소유) 본교 지분이 50% 미만인 비영리기관 공동출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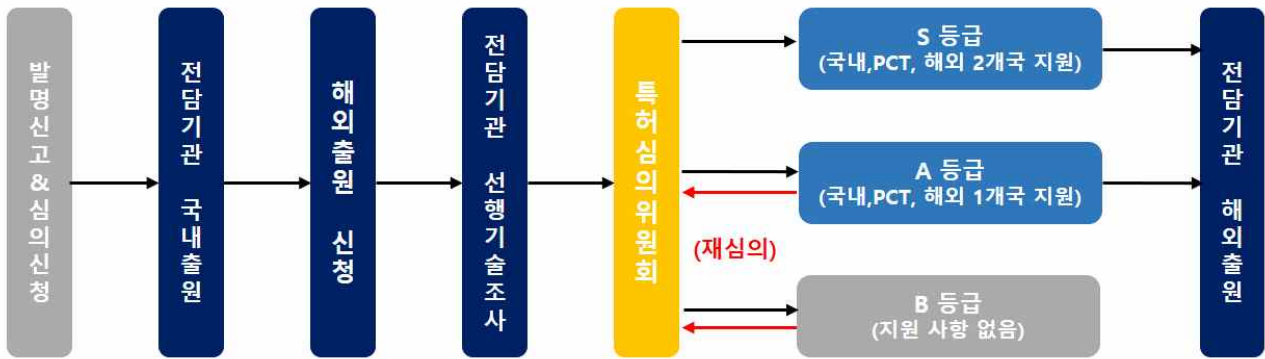
□ 심의 방법

- 심의 방식 및 단계

- 발표 평가

-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 특허에 한하여 SRnD를 통해 최초 국내출원 발명신고 시 특허심의 진행에 체크

※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발명 신고 진행(심의 소요기간은 최소 2개월 예상)



○ 심의 절차

- 1) 발명신고 시 신청하며,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 희망 시점에 심의 진행
- 2) 발명자가 기술 설명자료 제출
- 3) 특허심의위원회 개최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 원칙)
- 4) 등급 결과에 따른 해외출원 지원

○ 심의 등급별 해외출원 지원 사항

등급	산정기준	진행 내용 (재원)	등급설명
S	90점 이상	국내, PCT, 해외 2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원천성이 우수하고, 미래 기술 분야를 혁신·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A	80~89점	국내, PCT, 해외 1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특허성이 우수하고,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B	70~79점	지원 사항 없음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높지 않으며, 근 시일 내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술

※ B등급의 경우 별도 지원은 없으나, 특허지원 간접비 & 연구과제비 & 자체부담 등으로 해외 출원 진행 가능

□ Q&A

- Q. 해외출원 시 반드시 심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허허심의 신청은 발명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해외 출원을 위해 반드시 특허허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특허허심을 통해 우수등급(S, A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등급별로 출원 비용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 특허허심의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오. 횟수 제한은 없으나 발표 평가 후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S, A 등급에 한하여 별도 지원)
- Q. 반드시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출원해야 하나요?
A. 네. 단, 비 전담 출원기관을 통해 이미 국내 출원을 진행한 경우, 전담 출원기관으로 사건 이관 후 특허허심의 신청 가능합니다.
- Q. 논문 등 공개된 내용도 특허허심의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국가별로 특허법이 다르므로 공지에외주장을 인정하는 국가에 한하여 출원 가능합니다. (미국 인정, 유럽·중국 불인정) 따라서 심의 결과 S등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2개국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심의 일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국내 출원일로부터 4개월 전후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대표발명자에게 발표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발표 및 질의응답 원칙)

□ 관련 문의

구분	분야	담당자 연락처
특허 출원	공대 (전기정보/컴공 외)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공대 (전기정보/컴공)	최성연, 02-880-7890, snucsy@snu.ac.kr
	의대/치대/간호대	조영민, 02-880-2263, ycho326@snu.ac.kr
	그 외 대학	박형종, 02-880-2263, phj0921@snu.ac.kr
특허허심의위원회 운영		김종보, 02-880-7891, kimjongbo@snu.ac.kr
		최성연, 02-880-7890, snucsy@snu.ac.kr